

[별표 3] <개정 2019.1.17.>

시설자금 지원사업별 융자조건 및 한도

(제9조제2항 관련)

사업별	융자기간 (상환조건)	융자비율	융자한도
1. 구조조정 지원사업	자동화사업, 정보화사업, 기술개발사업화사업, 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, 창업지원사업, 사업전환사업, 설비이전사업,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, 서울형산업(팹션·디자인·애니메이션·소프트웨어·문화관광상품산업·벤처기업 및 국제회의기획업)		
시설자금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소요자금의 100% 이내	8억원 이내 (단, 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은 5억원 이내)
경영안정자금	3년 이내 (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)	1회전 소요자금의 100% 이내(시설자금 지원범위 내) 중소기업공동사업은 시설자금 지원범위의 1/4 이내	3억원 이내
2. 입지지원사업			
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지식산업센터 건설비의 75% 이내	200억원 이내
지식산업센터 입주지원 사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입주자금의 75% 이내	8억원 이내
공장용지 임대사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용지매입비의 75% 이내	20억원 이내
산업단지 입주지원 사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용지매입비 및 건축비의 각 75% 이내	8억원 이내
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 시설설치사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건축경비의 75% 이내	200억원 이내
벤처기업 입주지원 사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)	입주자금의 75% 이내	8억원 이내

사업별	용자기간	용자비율	용자한도
공장 및 사업장 설치 사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사업비의 75% 이내	50억원 이내
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건축비의 75% 이내	100억원 이내
산업개발진흥 지구 · 특정개발진흥 지구 내 권장업종 관련	시설건설사 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건설비의 75% 이내
	시설 증 · 개축 사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증 · 개축 사업비의 75% 이내
	임주지원사 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시설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의 75% 이내
자산화사업	15년 이내 (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2년 거치 8년 균등 분할상환 3년 거치 12년 균등 분할상환)	사업장 매입비의 75% 이내	50억원 이내
3. 유통업구조개선 사업	◦ 공동창고 설치 및 사업비의 범위 : 기반, 건축공사비(부대시설비 포함), 건물임차비 및 건물매입비(토지는 제외)		
시장시설개선	15년 이내 (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)	소요자금의 75% 이내	10억원 이내
공동창고설치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소요자금의 75% 이내	15억원 이내
점포시설개선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소요자금의 100% 이내	1억원 이내
4. 시장재개발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시장재개발사업비의 범위 : 판매시설, 균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, 기반공사비와 설비비 및 필요경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속시설 : 주차장, 소비자 편의시설, 통로, 화장실 등 - 설비비 : 전기, 기계설비, 상하수도시설, 냉난방시설 등 설치비 - 필요경비 : 건물철거비, 이주비 등(단, 총사업비의 30% 이내에 한함) ◦ 임시시장설치사업비의 범위 : 임시시장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 건물임차비 		
시장재개발 사업	15년 이내 (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)	사업비의 75% 이내	100억원 이내 (단, 지역경제활성화 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100억원을 초과 하여 지원할 수 있 음)
임시시장설치 사업	15년 이내 (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)	사업비의 75% 이내	10억원 이내

사업별	용자기간	용자비율	용자한도
5. 외국인투자기업 지원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외국인 투자금액 범위이내의 임차료, 건축비 또는 건물매입비 및 이에 부대하는 기계 등 설비비	20억원 이내
6. 중소기업연구소 설립			
부설연구소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건물매입 또는 건축비와 이에 부대되는 기계설비비의 75% 이내	5억원 이내
공동연구소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건물매입 또는 건축비와 이에 부대되는 기계설비비의 75% 이내	10억원 이내
7. 건설사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건설장비 매입 또는 임차비의 75% 이내	5억원 이내
8. 호텔사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호텔건설비, 증·개축비의 75% 이내	10억원 이내
		호텔 개·보수비의 75% 이내	5억원 이내
9. 숙박사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숙박시설건설비, 증·개축비의 75% 이내	5억원 이내
		숙박시설 개·보수비의 75% 이내	3억원 이내
10. 중소기업 공동사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사업비의 75% 이내	100억원 이내 (단,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)
11. 운송업구조개선 사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소요자금의 75% 이내	8억원 이내